

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

-法律 第6,154號(2000.1.12)-

보건복지부는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整備計劃에 따라 각종 規制를 磨止 또는 緩和하고, 青少年을 대상으로 頽廢·變態營業行爲를 하는 營業者에 대한 처벌을 強化하는 등 각종 行政規制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危害食品 단속등에 대한 主務長官의 裁量을 축소하여 엄격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식품의 安全관리를 強化하기 위하여 食品衛生法을 개정·공포하였다.

1. 主要骨子

- 가. 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하여 消費者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基準을 정하여 告示하도록 함(案 第10條).
- 나. 政府責任하에 施行하고 있는 人蔘製品類·健康補助食品 등에 대한 事前製品検査 제도를 磨止함(案 第13條 내지 第15條).
- 다. 輸入식품등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 公務員 또는 檢查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(案 第16條).
- 라. 食品接客營業者가 青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을 遊興接

客員으로 雇傭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다가 營業의 許可가 取消되었거나 營業所가 閉鎖된 경우 동일장소에서는 1年間,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2年間 食品接客業의 許可(申告)를 제한함(案 第24條).

- 마.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등에 대한 營業許可(申告) 제한규정을 削除함(案 第24條).
- 바. 食品振興基金의 용도를 음식문화 改善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市·道에만 설치되어 있는 食品振興基金을 市·郡·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案 第32條 및 第71條).
- 사. 營養士資格試驗의 응시자격을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로서 教科目 및 學點履修 등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 함(案 第37條).
- 아. 營業者の 시설기준 위반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罰則을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으로 강화함(案 第77條).

2. 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<p>第10條(表示基準)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·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. 〈但書 新設〉.</p> <p>②(생 약)</p> <p>第13條(製品検査) ①保健福祉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등의 製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製品検査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検査의 方法·節次·手數料 기타 檢査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14條(製品検査의 표시)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検査에 合格한 食品 및 食品添加物에 대하여는 그 容器·포장에, 器具 또는 容器·포장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第15條(不合格品등의 販賣등 禁止)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品検査를 받아야 할 食品등은 그 製品検査에 合格되지 아니하거나 製品検査에 合格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.</p> <p>第16條(輸入食品등의 申告등) ①(생 약)</p> <p>②保健福祉部長官·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 公務員 또는 檢查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·食品</p>	<p>第10條(表示基準) ①-----</p> <p>----- 다만, 생물의 遺傳子중 유용한 遺傳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遺傳子와 결합시키는 등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農·畜·水產物 등을 원료로 하여 製造·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.</p> <p>②(現行과 같음)</p> <p>〈削除〉</p> <p>〈削除〉</p> <p>〈削除〉</p> <p>〈削除〉</p> <p>第16條(輸入食品등의 申告등) ①(現行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-----</p> <p>----- 여야 한다. -----</p>

現 行	改 正 案
〈但書 新設〉	다만,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〈新 設〉	2의2.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
3.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(法人的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)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	3. 營業의 許可가 取消(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)된 후 1년
〈新 設〉	3의2.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(法人的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)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現行과 같음)
6.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때	〈削 除〉
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.	②
1.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〈但書 新設〉	1. — 營業所의 閉鎖命令(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 다만,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所가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〈新 設〉	1의2.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

現 行	改 正 案
<p>2.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(法人的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)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<u>〈新設〉</u></p> <p>第27條(衛生教育) ①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教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후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이 되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을 받을 수 있다. <u>〈新設〉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第28條(食品衛生管理人) ①營業者(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) 중 乳製品, 化學的 合成品인 食品添加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 및 食品添</p>	<p>2. -----</p> <p>--- 營業所의 閉鎖命令(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을 받은 후 1年-----</p> <p>2의2.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(法人的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)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</p> <p>第27條(衛生教育)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에게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教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教育을 받아야 하는 者중 營業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그 從業員중 食品衛生에 관한 責任者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責任者로 하여금 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衛生教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· ⑥ (現行 第3項 및 第4項과 같음) <u>〈削除〉</u></p>

現 行	改 正 案
<p>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②食品衛生管理人은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·加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·監督하여야 하며,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두 者는 第2項의 食品衛生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選任한 때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.</p> <p>⑤食品衛生管理人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
<p>第31條(營業者の 준수사항) 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管理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</p> <p>〈新設〉</p>	<p>第31條(營業者の 준수사항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	<p>②食品接客營業者は 青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(이하 이 項에서 "靑少年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青少年을 遊興接客員으로 雇傭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2.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中 青少年保護法에 의한 青少年有害業所(이하 이 項에서 "靑少年有害業所"라 한다)에 青少年을 雇傭하는 행위 3. 青少年有害業所에 青少年을出入하게 하는 행위 4. 青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
<p>第32條(衛生等級)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衛生等級 기준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所·加工業所 또는 食品</p>	<p>第32條(衛生等級) ①-----</p> <p>-----</p>

現 行	改 正 案
<p>接客業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指定할 수 있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·検査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市·道知事는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과 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飲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</p>
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第33條(施設利用의 거부금지) 食品接客營業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營業施設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傳染性疾病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者 2. 賭博 또는 風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犯法行爲를 하는 者 	<p>③ · ④ (現行과 같음)</p> <p>〈削除〉</p>
<p>第37條(營養士의 免許)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합격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 	<p>第37條(營養士의 免許) ①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
<p>2. · 3. (생 략)</p> <p>〈新設〉</p>	<p>1. 高等教育法에 의한 學校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로서 教科目 및 學點履修 등에 관하여 保健福利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</p> <p>2. · 3. (現行과 같음)</p> <p>②保健福利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관리를 保健福利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第38條(缺格事由)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精神疾患者 또는 精神遲滯人 2. · 3. (생 략) 4.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난지 아니한 者 	<p>第38條(缺格事由)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1. 精神疾患者</p> <p>2. · 3. (現行과 같음)</p> <p>4. _____</p> <p>_____</p> <p>1年</p>

現 行	改 正 案
<p>第40條(補修教育) ①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補修教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.</p> <p>②第1項의 補修教育의 教育對象者·教育方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.</p>	<p>第40條(教育)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理士 및 營養士에게 教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----- 教育 -----</p>
<p>第41條(委任) (생 략)</p> <p>〈新設〉</p>	<p>第41條(權限의 위임 및 위탁) ① (現行과 같음)</p> <p>②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教育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·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<p>第44條(設立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별로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	<p>第44條(設立) ①·② (現行과 같음)</p> <p>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10분의 1(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)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·⑤ (現行과 같음)</p> <p>〈削除〉</p>
<p>第46條(定款)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目的 2. 名稱 3. 事務所의 所在地 4. 組合員 및 總會에 관한 사항 5. 任員에 관한 사항 6. 業務에 관한 사항 7. 會計에 관한 사항 8. 解散에 관한 사항 9. 기타 組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	
<p>第47條(組合任員의 改選命令 등) 保健福祉部長官은 組合의 決議 또는 任員의 행위가 公益에 반하거나 法令·定款 또는 이 法에 의한 處分에 위반하여 組合員의 이익</p>	<p>〈削除〉</p>

現 行	改 正 案
<p>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組合의 事業이나 그 財產의 狀況으로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게 하거나 任員의 解任 또는 改選을 命할 수 있다.</p>	
<p>第53條(事業)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생 認) 3. 食品衛生管理人의 教育 4. · 5. (생 認) 	<p>第53條(事業)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現行과 같음) 3. 食品衛生에 관한 教育 4. · 5. (現行과 같음)
<p>第54條(準用) 第46條·第47條 및 第51條 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 한다. 이 경우 “組合”은 “協會”로, “組合員”은 “協會의 會員”으로 본다.</p>	<p>第54條(準用) 第51條第1項-----</p>
<p>第55條(是正命令)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認)</p>	<p>第55條(是正命令) ①-----</p> <p>-----필요한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現行과 같음)</p>
<p>第56條(廢棄處分 등)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, 第7條第4項, 第8條, 第9條第4項, 第10條第2項, 第11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用途·처리 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 認)</p>	<p>第56條(廢棄處分 등) ①-----</p> <p>-----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現行과 같음)</p>
<p>第57條(施設의 改修命令 등) ①· ② (생 認)</p> <p>③食品接客營業所에 있어서 建築物의 所有者와 食品接客營業者가 다른 경우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改修를 命하는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衛生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.</p>	<p>第57條(施設의 改修命令 등) ①· ② (現行과 같음)</p> <p>〈削除〉</p>

現 行	改 正 案
第58條(許可의 取消등)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, 營業所의 閉鎖(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를 命할 수 있다.	第58條(許可의 取消등) ①-----
1. 第4條 내지 第6條, 第7條第4項, 第8條, 第9條第4項, 第10條第2項, 第11條, 第15條, 第19條第1項, 第22條第1項 後段·第4項·第5項 後段 및 第6項, 第26條第3項, 第27條第3項, 第28條第1項·第3項 및 第4項, 第29條, 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	1. ----- ----- 第15條, 第16條第1項 ----- 第27條第5項, 第29條-----
2. (생 략)	2. (現行과 같음)
3. 第24條第1項第1號 · 第5號 또는 第6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	3.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-----
4. (생 략)	4. (現行과 같음)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現行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現行과 같음)
第60條 (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) ①保健福祉部長官·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畜產物衛生處理法·水產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 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衛生上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	第60條 (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) ①----- ----- 畜產物加工處理法-----
② (생 략)	② (現行과 같음)
第65條(課徵金 處分) ① ~ ③ (생 략)	第65條(課徵金 處分) ① ~ ③ (現行과 같음)
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賦課·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,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·徵收한 課徵金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에 각각 归屬된다.	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賦課·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귀속되고, 市·道知事が 賦課·徵收한 課徵金은 市·道의 食品振興基金(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을 말한다. 이하 이 項에

現 行	改 正 案
	<p>서 같다)에 귀속되며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·徵收한 課徵金은 市·道 및 市·郡·區의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. 이 경우 市·道 및 市·郡·區에의 귀속 방법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
⑤ (생략)	⑤ (現行과 같음)
第66條(國庫補助) 保健福祉部長官은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補助할 수 있다.	第66條(國庫補助) -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現行과 같음)
8. 第68條의規定에 의한死體의解剖에 소요되는經費	〈削除〉
第68條(死體解剖) ①保健福祉長官·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·道知事은 食品등으로 인한 疾病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疑心되는 疾病으로 死亡한 者의 死體를 그 遺族의 同意를 얻어 解剖할 수 있다.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死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원인을 判明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遺族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여도 그 遺族에게 통지를 한 후에 死體를 解剖할 수 있다. ③第1項 및 第2項의規定은 刑事訴訟法의規定에 의한 強制處分을 排除하지 아니한다. ④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死體를 解剖하는 때에는 특히 禮儀를 지켜야 한다.	〈削除〉
第71條(食品振興基金)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市·道에 食品振興基金(이하 "基金"이라 한다)을 設置한다.	第71條(食品振興基金) ①-----
② (생략)	-----
③基金은 다음의事業에 사용한다.	市·道 및 市·郡·區-----
1. ~ 5. (생략)	② (現行과 같음)
〈新設〉	③-----
6. (생략)	1. ~ 5. (現行과 같음)
④基金은 市·道知事が 管理·運用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	6. 飲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	7. (現行 第6號와 같음)
	④-----市·道知事 및 市長·郡守·區廳長이-----

現 行	改 正 案
<p>第76條(罰則) 第28條第1項 및 第3項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併科할 수 있다.</p> <p>第77條(罰則)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<u>태만히 하여 이 法에 위반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 · 加工하게 한 食品衛生管理人</u></p> <p>5. 第29條第1項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</p> <p>6. ~ 8. (생 략)</p>	<p>第76條(罰則) 第34條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第77條(罰則)-----</p> <p>---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現行과 같음) (削除)</p> <p>-----</p> <p>5. ----- 第31條第1項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~ 8. (現行과 같음)</p>
<p>第78條(過怠料)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1. 第3條, 第26條第1項 및 第3項(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第27條第1項 및 第3項(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第28條第4項 또는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 者</p> <p>4. 第57條第1項 또는 第3項(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第78條(過怠料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第27條第1項 및 第5項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現行과 같음)</p> <p>3.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</p> <p>-----</p> <p>4. 第57條第1項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現行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現行과 같음)</p>